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17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민병덕 · 이수진 · 이언주
권칠승 · 박희승 · 김병기
김한규 · 김남희 · 위성곤
안도걸 · 정혜경 · 양부남
김문수 · 부승찬 · 박 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따라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재하며 ‘보훈’에 대한 인지조차 저조한 형편임.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 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대사회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임.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해결됨.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과 국가 자긍심의 함양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음.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으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이 없어 일반 국민에게 보훈문화는 여전히 생소함.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이를 통해 보상에 치우친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

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기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장려하여야 하고, 이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희생·공헌을 균형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훈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학교, 공무원 등, 사회로 영역을 나누어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2. “보훈기념행사”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말한다.
3. “보훈문화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 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충시설
 -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 및 국가관리묘역

다.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진흥하는
시설·장소

4. “보훈문화교육”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과 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보훈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는 보훈문화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11

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다음 각 목의 보훈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보훈기념행사 및 보훈의 달 사업

나.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

다. 보훈문화교육

라. 그 밖에 보훈문화 진흥 관련 사업

3. 보훈문화실태조사의 수립

4. 보훈문화 관련 국제교류

5. 보훈문화진흥원, 보훈문화확산기관의 운영

6. 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7. 재원 확보방안

8. 그 밖에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보훈문화진흥 기반 조성

제1절 보훈문화실태조사 등

제8조(보훈문화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보훈문화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훈문화실태조사의 실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문화확산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보훈문화확산기관(이하 “확산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그 밖에 보훈문화를 진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② 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확산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확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확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문화의 진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확산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확산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확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산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확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기본방향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과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확산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보훈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훈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보훈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보훈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보훈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진흥원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보훈문화진흥원

제14조(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보훈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연구개발 및 조사

4. 국내외 연구교류협력 및 보훈문화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5. 민간기관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행사 지원
6. 학교와 확산기관, 보훈기념행사, 보훈문화공간 등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7.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업무
8.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의 구축·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진흥원의 재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설립·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원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훈문화진흥사업

제1절 보훈기념행사 등

제23조(보훈기념행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단위의 보훈기념행사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보훈기념행사를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보훈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훈의 달 사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의 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보훈의 달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훈문화공간의 관리주

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훈문화교육

제26조(기본방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문화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보훈문화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 간에 균형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학교의 보훈문화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문화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보훈문화교육에 관한 체험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학등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의 기념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문화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보훈문화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보훈문화진흥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보훈의 달 동안 보훈문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보훈기념행사·진흥원 및 확산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교육의 참여, 보훈문화공간의 체험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보훈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보훈문화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문화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보훈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문화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의 보훈문화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사회의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보훈문화교육 관련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보훈문화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

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보훈문화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훈문화공간의 관리주체는 보훈문화교육을 목적으로 공간이 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과 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진흥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보훈교육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훈교

육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홍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홍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